

●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6-156호

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,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체납과 관련하여, 채권압류 해제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08월 21일

전남지방우정청장

공시송달공고

1. 제 목: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 해제 통지 공시송달

2. 근거법규

- 가. 국유재산법 제32조(사용료) 및 동법 제73조(연체료 등의 징수)
- 나. 국세징수법 제10조(독촉) 및 제58조(압류 해제 통지)
- 다.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(송달)
- 라.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(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)

3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5일간(2026.8.21.~9.4.)

4. 공고대상자 및 내역 (단위: 원)

체 납 자		체 납 내 역		
성 명	주 소	압류재산	압류해제금액	징수과목명
신용*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화양면 자매로 **	예금채권	14,580,610	국유재산사용료
	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소호로 **			

5. 체납한 국유재산사용료 납부(또는 충당 등)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채권에 설정되었던 압류가 해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압류해제 통지서 등본 , 제3채무자 목록 요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